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적 활동 범제화

학생자치상임위원회

학교 폭력의 실태



<다이아그램> 학교 폭력 발생유형

학교폭력의 심각성

- 피해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
- 학교 전체적으로 폭력에 의한 억압적 분위기 형성
- 학교폭력이 일상화 된다면 '폭력'에 의해 학생간의 계급 발생 및 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 가해 학생들은 '폭력만능주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음.
- 학교나 정부에서의 강압에 학생들의 반발감을 살 수 있음.
- 학생들의 무관심에 법이 무력화될 수 있음.

법안 제정 배경

신구문 대조표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또래조정(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등)을 비롯한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상시로 시행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 별로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방안 1. 또래중재

반마다 **또래 중재자**를 선정해 또래조정
교육과 훈련을 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방안 2. 학급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의제에 따라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방안 3. 학생자치법정

경미한 교칙 위반이 잦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체벌이 아닌 학생들로 구성된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유익한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

선생님

학생



학생자치법정

→ 학생자치권 확대

→ 비행방지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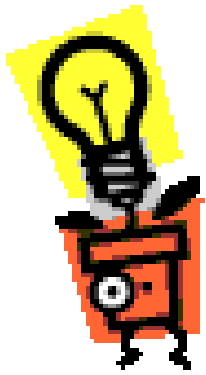
→ 바람직한 인성교육

→ 민주시민 자질향상

→ 학생의 자율적 판단

→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일체감

→ 준법정신 함양



결론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 자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THE END

